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73 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정혜경·백승아·서미화

허성무 · 전종덕 · 이재강

김 윤·한창민·김준형

윤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 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44조(벌칙)		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			
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			
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1호			
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			
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			
제기할 수 없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1의2.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		
	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		
	사용자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
제4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48조(과태료) ①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		
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		
부과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	<u><</u> 삭 제>		
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			
<u>자</u>			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